

"나는 저 놈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 가해자 실명공개 의미와 효과 -

0. 들어가며

100인위원회의 1차 실명공개 이후 만 8개월이 지났다. 우리의 활동은 운동사회, 전체 사회, 가해자와 피해자,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많은 고민과 논쟁거리들을 남겼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가 대개 그러하듯이, 100인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누가 받아 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는 애초의 문제제기를 역사 속에 위치짓고 그 의미를 생성시켜 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여성주의자들과의 토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반갑고 기쁜 일이다. 우리의 운동은 그 시작부터 대학 여성주의자들의 반성폭력 운동에 빚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100인위원회의 운동 또한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서 있는 지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그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100인위원회 '전체'의 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공통의 입장을 내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개인네트워크' 조직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말했듯이 100인위원회 내부에서 또한 논쟁은 있었고 지금도 많은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0인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그러나 개인적 입장과 관점으로부터 분명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발제를 하려고 한다.

1.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 :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1)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 그러나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라면, '전략'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100인위원회 회원들의 포지션은 가해자 실명공개를 (선택 가능한 여러 전략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불가피하고 유일한 운동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00인위원회에 있어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선택'이 아닌 일종의 '비명'에 가까웠다.

우리는 운동사회의 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로서 우리 내부의 반여성적인 행태들을 많이 봐왔고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곳에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바탕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밭 달고 있는 우리의 지리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고 그 폭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 2000/12/15 <보도자료 Q&A> 중

우리의 운동은 운동사회 성폭력의 극악한 상황과 은폐된 구조를 폭로하고 피해 경험을 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통한 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게시판에서는 실제로 '여성

1) 그러나 물론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표현에서의 '나'라는 용어는 구체적 피해자 개인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가해자 실명공개가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100인위원회의 1차 공개가 몇몇 피해자들에 대한 끔찍한 공격을 초래했고 그것에 대해 100인위원회가 매우 부력했다는 점은 분명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실명공개' 문제는 애초에 100인위원회가 제기했다가 내부 논쟁을 통해 암묵적으로 폐기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개'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던 그 구조, 그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여성들을 '자발적으로' 침묵하게 하는 그 구조 말이다.

운동의 나아갈 길'을 논함으로써 100인위의 문제제기를 희석시키거나, 우리가 한번도 지양한 적 없는 '한국 여성운동의 대표' 혹은 '여성주의자들의 대표' 지위를 강요함으로써 여성주의자들의 다양한 발언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누차 밝혔듯이, 우리는 집단적 피해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저행되고 그것을 온존시키는 운동사회의 특수한 은폐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발언한다. 우리의 운동이 반성폭력 운동의 전부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001/2/9 <정병도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입장> 중

이러한 '포지션'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토론에 있어 중요하다. 100인위원회의 발언이 기반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피해자'로서의 포지션이었다. 즉, 그것은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언어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해자 실명공개는 더없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가해자 실명공개' 이외에는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도,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었던 운동사회 특유의 가부장적 은폐 구조는 100인위원회 활동의 위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조건이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가부장적 운동사회, 게다가 '조직'과 '대의'와 '동지애'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화해와 용서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특수한 정당화 구조. 100인위원회 회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묻혀지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고, 가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지위의 잘나가는 '명사'가 되는 상황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사건은 결코 공개적·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합구멍'이 벌어졌으며, 피해자가 수많은 2차가해에 방치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녔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였고, 목격자였고, 앞으로 똑같은 폭력에 처해야 할 잠재적 피해자였다.

그러므로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소문'으로만 떠돌고 결코 '사실'로 인정받지 못해 온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들을 가해자 실명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은폐되어온 운동사회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서 드러내는 것, ②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 ③ 폐쇄적 운동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자기방어로서 운동사회 전체에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

2. 성폭력사건 해결 원칙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

이제, '가해자 실명공개'가 반성폭력 운동 전체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할 차례이다.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하나의 선택이어서는 안 되는 이상, 가해자 실명공개는 반성폭력 운동에서 반드시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할 논쟁점 중의 하나이다. 비록 100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표명한 적은 없으나, 가해자 실명공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논리에 기반하여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일반적 '원칙'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전선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정리한 100인위원회 실명공개의 세 가지 의미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토론을 해 나가 고자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기

가해자 실명공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가해자 실명공개 없이 사건을 '사실'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무수한 소문들, 몇백번 왜곡의 과정을 거친 술자리 비화(秘話), 그리고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흑백사진이 되어 잊혀지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이다. 따라서 불행히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묵숨을 건 도약'은 그러한 일과 그러한 고동이 '존재했음'을 '사실'로 구성하는 일이다. 피해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만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벌어먹을 세상.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은 이 벌어먹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장해 왔다. '증거주의'에 기반한 법담론에 반대해 왔고, '현 미친놈이나 저지르는 성기삽입'으로서의 '강간'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여성들이 처한 조건과 그녀들의 경험을 담아 내기에 가당치 않다는 점에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주장해 왔으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성폭력 사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바로 저 놈이 성폭력 가해자다' 라고 말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구체적인 피해자의 고통과 구체적인 가해 행위는 말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해자는 말해지지 말아야 하는가? 가해행위를 한 당사자의 구체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가해 행위자를 구체화시키는 것 - 즉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가해자 이름이 빠진 사건 개요란 양고 없는 전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구성해야만 한다. 그것이 거기에 존재했음이 명백한, 가해를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가 흰 눈 위의 핏자국처럼 선명한, 그러한 종류의 '사실'로서 말이다.

(2)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여성을 모욕하고 공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비난과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해자 실명공개는 남녀간 권력관계의 모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매우 정치적인 입장표명이기도 하지만,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상습범이라는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즉, 사건이 은폐되면 그 성폭력 가해자는 다시 유유히 성폭력을 할 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 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제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 2000/12/26 <입장글> 중

100인위원회는 1차 공개를 하면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정병도 사건, 이영주 사건, 김성희 사건, 김용범 사건이 그러했고, 100인위원회가 2차로 공개했던 강철구 사건도, 작년에 있었던 박남철 사건도, 얼마 전 공개된 이한별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은폐된 사건'의 가해자들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말해지지 않았던 탓에 주변의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는 '누가 성폭력 가해자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주는 것이다. 100인위원회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 보호'의 의미를 강조해 왔으며, 그것은 (그 자체는 구리구리하지만)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가해남성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예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 채택되어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신원/사건을 방방곡곡에 붙여놓게 한 매진법의 예에서도 그 정당성이 재확인된다.

(3) 가해자의 행동반경 제약을 통한 피해자의 생활권 보장

가해자 실명 공개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일정정도 피해자의 생활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100인위원회가 공개한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운동사회라는 엄청난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폐쇄적 커뮤니티 속에서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공간 전체에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할 필요가 있었으며, 바로 그 점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피해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정당한 자기방어'로 위치지워 졌다.

···코닥지만한 징계를 받거나 사과문 한 장 쓰고 나서 할 일 다했다는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 그 물을 볼 수가 없어 피해자는 휴학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뒤돌이 자리에 불참하고 집안에 틀어박힌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가해자의 존재를 주변인들에게 인지시키고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행동반경이나 인간관계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것을 일정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 만약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적어도 폭력의 생존자로서 대우받으며 우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것은 피해자 치유의 일

부이자 정당한 생활권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운동을 포기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3. 쟁점들 : 반성폭력 운동의 입장과 원칙을 다시 묻는다

100인위원회가 표방해 온 입장 및 원칙들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표방해 온 그것과 많은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또 한 다르기도 하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 해결의 시작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인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되는가, 아니면 가해자 면담 이후에야 그것이 가능한가? 가해자 실명공개와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문은 그 의미와 효과에 있어 어떻게 다른가?

대학 여성주의자들과 100인위원회 사이의 토론이 단순히 '서 있는 곳'과 '포지션'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입장과 원칙을 되돌아 보려 한다.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인 '실명공개사과' 원칙이 100인위원회 운동의 밑거름이자 자원이 되었듯이, 이제는 100인위원회 운동의 성과와 오류를 함께 되짚어 보고 각자의 전선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1)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는가?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해결의 시작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인가? 100인위원회는 가해자 실명공개를 "성폭력 사건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가해자 실명공개가 크나큰 처벌로 과장되고 있는 상황은 운동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온정주의로 평택해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즉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완성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행위의 공표를 통한 피해자 인권회복의 첫걸음일 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앞으로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 2000/12/26 <입장글> 중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100인위원회가 가해자 실명공개를 '사건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규정하게 된 맥락은 그것을 '사건 해결의 완성'이나 '가해자에 대한 크나큰 처벌'로 의미화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의미에서이다. 즉, '시작'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처벌'이 아님을, 가해자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별 사건들은 '언제나' 특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해결과정의 맨 처음에 올 수도,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 공개하는가가 아니라, 가해자 실명공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100인위원회가 주장하는 '가해자 실명공개'의 의미는 첫째, 처벌이 아니며, 둘째, 사건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negative한 규정이다. positive한 규정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고 확장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100인위 운동과 비견되는 '가해자 실명공개사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 '어떤 포지션에 서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가?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포지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00인위원회의 포지션은 100인위원회가 제시한 사건해결원칙에 반영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할 때 가해자를 동의나 인준을 얻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가해자의 경쟁이나 교화를 책임질 의무는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왜 사건에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는 '그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매우 엉뚱하고 피상한 질문일 따름이다. 100인위원회에게 있어서 정계의 이성과 감시, 가해자 교육은 가해자 소속 조직의 몫이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

자의 - 따라서 여성들의 몫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것은 '포지션'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는 여성운동조직이나 여성운동조직이 주축이 된 대책위원회였다. 그리고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 자신이거나(실명공개사과의 경우), 제3자로 위치지워진 대책위였다. 여기서 '제3자'라는 과도한 표현을 쓴 것은 그것이 피해 당사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다만 몇발자국이라도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성운동조직과 '대책위원회'의 포지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간다.

(3) 여성주의자들은 '공정성'을 표방해야 하는가? : 당파성의 문제

100인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26일 발표한 입장글에서 <해결과 처벌의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다,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 및 사건 규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다, ③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시작일 뿐 징계는 될 수 없다, ④ 가해자 소속단위 및 조직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가해자 징계에는 징계내용, 징계이행여부 및 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⑥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는 것에서 완결된다. 사건의 성립과 규정, 조사의 과정, 해결 여부의 판단, 이 모든 것에 대해 100인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우리는 성폭력의 개념이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 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사적인 자리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또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부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기억을 전제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폭력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성폭력은 그것의 물리적 심각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권력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여성으로서 당했을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의 경험을 그 안에 위치 지워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어려한 바탕 위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 그 상황에 대해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 규정 내리는가'이다. - 2000/12/26 <입장글> 중

피해자와 2차 피해자들의 경험, 요구와 상황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접수 이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내지 이에 준하는 책임단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조사과정은 가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가해자와의 면담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가해자와의 면담사에는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는 성폭력 사건의 규정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것을 성폭력으로 경험하였다면 성폭력 사건은 성립된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설명만으로도 성폭력은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의 조사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2000/12/26 <입장글> 중

100인위의 입장 속에서, 사건 해결과정을 '판단'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사건 해결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며, 여타 사건해결과정을 집행하는 것은 가해자 소속 단위이다. 그렇지만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사건해결과정을 '판단'하는 동시에 '집행'하는 주체였다.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피해자의 관점'에 서서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해결사'로서의 포지션과 겹쳐질 때, 일정한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너무나 많은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사건 해결주체로 의미화되어 왔다. 이때 '객관성'과 '공정성'은 여성주의적 관점과 실천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외피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면담은 해당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거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다는 의미에서의 '공정성'이다.

100인위가 제기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러한 '공정성의 외피'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존재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 단 둘 뿐이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 후 '공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중립적 판단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100인위의 주장은 '법적 판단주체'의 남성성에 대한 지적 - 경찰도, 검찰도, 재판관도,

법을 조항조차도 남성적이라는 여성주의적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 간단히 말해, '누구나'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일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제3자'로서의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장하는 자들의 포지션을 따져 묻고 그것이 '가해자의 관점'임을 드러내야 하며, 상반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여성문제 그 자체가 그러하듯이 성폭력 또한 '당파성'의 문제라면, 여성주의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에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취해 온 '공정한 척 하기'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은가? 그것이 예상되는 공격의 일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너의 피해를 증명해 보라'는 입증 책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공정한 해결사'로서 위치지워진 여성운동조직의 이미지는 첫째, 허구적 중립성을 재생산하고, 둘째,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며, 셋째, 가해자를 설득·교화·갱생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4) 가해자 인권의 문제? : 유사(類似) 질문에 대처하기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한 대표적인 비난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날강도같은 논리는 대학 여성주의자들도 많이 접해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이 '가해자 인권' 논리에 대해 100인위원회의 운동과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함께 언어와 논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100인위원회가 제기한 '피해자의 포지션'에 섰을 때, 문제는 훨씬 단순하고 어치구니 없게 느껴진다 - 가해자의 인권을 왜 피해자가 보호해주어야 하느냐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가해자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일종의 유사(類似) 질문에 불과하다. 가령 이런 것이다. 재소자의 인권은 그 재소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과 비교하여 논의되지 않는다. 강도의 인권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인권과 동일선상에 놓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인권은 결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나가던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 사실을 발화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불쌍한 얼굴로 드러나 지는가를 의심해야 한다.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사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 그 자체이다. 누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여성주의자들이? 또, 가해자 실명공개가 가해자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인가?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

성폭력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해자 인권론'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악질적인 종류의 탈맥락화이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범죄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실체화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피해자 치유의 일부이고, 피해자의 정당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긴급 조치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또 다른 전략일 뿐이다. 너희를 피해자로 인정해 줄 테니 가해자한테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 이건가? 가해자의 실체는 온데간데없이 유령화시켜 버리고 '불쌍하게 당한 피해자' 이미지 하나 만들어 팔팔 끼고 웃웃 혀나 차면, 그래 너희의 그 잘난 양심이 우쭐하기야 하겠지. 뻔뻔한 놈들. 녀들 같은 놈들이 있는 한 가해자 실명공개는 '주홍글씨'는커녕 '주홍 스티커'도 될까 말까다. 어디서 주위들은 건 있어서 '인권' 운운하면 다 통하는 줄 아는데,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가해자의 '사과문'을 필요로 하는가? : 하나의 제안

글을 마치기 전에 가해자 실명공개와 관련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학 반성폭력 운동과 100인위원회 양자 모두, 아직까지는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를 적어도 해결과정의 한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인위원회의 사건 공개 이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몇몇 사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 사과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병도 사건과 이영주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과문은 피해자들이 원했던 '권정어린 사과'이기는커녕, 오히려 애비 피해자의 관점에서 규정해 놓은 성폭력 사건을 다시 '가해자의 맥락'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버리는 기회로 들먹이곤 한다. 거의 신과 소설에 가까운 그들의 사과문을 몇 번씩이나 되짚고 다시 씌오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지집단을 통해 힘겹게 성취한 '경험의 해석'은 재차 삼자 위협에 처했으며,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과 모욕감을 가져 왔다. 함께 싸우는 대책위원회의 여성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탕진해야 했다. 우리는 정말 '가해자의 사과문'을 필요로 하는가?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문을 원할 수 있다. 그것은 피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둘째, '가해자 자신이 쓴 사과문'이 사건해결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가해자의 인정과 반성은 대개 그 동안의 사건해결과정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하나의 징표로 여겨진다. 셋째,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명분을 만족시켜준다.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회까지 주고 있다. 가해자 사과문까지 나왔으니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해자의 인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사건해결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많은 낡은 수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해자도 인정했다'라는 무기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사과문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사과문'이 아니라 '각자'를 받는 것이 어떤가? 가해자에게는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권리가 없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각서에 서명하고 각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그 각서에는 사건 내용, 사건 규정,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의 약속이 포함된다.

* * *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무수한 논쟁점들 중에서 몇 가지 만을 두서 없이 골라 이야기해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같은 100인위원회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100인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나의 '해석'에 기반하여 쓰여졌다. 자신의 포지션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성취되는 애매한 '중지의식'이, 포지션의 상이함을 드러냄으로써 귀결되는 '혼란'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대학 여성주의자들과 100인위원회의 포지션의 차이, 그리고 대학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포지션의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정치화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실명공개¹⁾의 의미

- 100인위의 전략, 그리고 학내 여성운동의 방식 혹은 전략²⁾

by 동전

0. 들어가며

100인위 관련 글을 쓸 생각을 하면서, 사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등을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100인위의 활동이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던지는 의미들이 폭넓고 다층적이었던 때문일 것이다.

덧붙여 아직까지 학단위에서 100인위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 학내여운단위에서의 실명공개 전략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100인위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 사례들을 '폭로'라는 형식을 통해 공개한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서 통신상으로 그리고 오프 상으로 많은 논쟁들이 오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특히 반성폭력운동의 전략으로서 혹은 반성폭력운동의 원칙이나 과정으로서 '사건을 공개한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한 논쟁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실제로 성폭력사건을 '공개'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나갔던 것은 학단위에서 시작된 방식이지만 100인위 공개는 학단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과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학단위의 사건공개는 사실상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자보'를 통해 구체화되었던 반면 100인위의 사건공개는 가해자와의 합의 없는, 피해자의 자기피해 언어화에 기초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함의들을 담고 있는 방식이다. 가해자의 '합의'를 받느냐, 마느냐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느냐, 마느냐³⁾의 선택지는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성폭력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위치(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위치까지)를 설정하는 문제 등과 연결되는 복합적인 것이다.

우선 학내 여성운동 진영에서 사건공개 및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자보문을 반성폭력운동의 원칙 혹은 전략으로 채택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사건은 개인-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이다.'

1) 운동의 방식/입장과 전략이 시간이 흐를수록 섞여 들어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구분되지 않음으로서 하나의 고정된 이론(정식)으로서 굳어가는 한편 새로운 전략들을 찾아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2) 정확히 사과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과문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되는가 그리고, /같은 대상 및 목적을 설정하는 것에 깔린 기본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서 '실명공개'와 '실명공개사과'는 다양한 차이들을 드러내게 된다.

3) 사건공개에 원칙/전략에 대한 입장은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차이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 처음 제기된 맥락을 제대로 된 자료수집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분석하지 못했기에 잘못 판단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을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정확히는 가해자)이 속한 공간에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과 해결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폭력사건이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이고 성적인⁴⁾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일상화되고 정상화되어 문제 제기조차 되지 못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도 오래되고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들 알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공개 전략이 현실화되고 대학사회에서 일정정도의 동의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희석된 부분들은 없는 걸까?

① 사건공개 목적 및 의의

‘사건공개’가 초기에 가졌던 목적은 대략 몇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첫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성폭력을 개별적인/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역사적으로/사회적으로 뿌리깊게 만들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공개된 사건의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드러내지 못한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건공개는 피해자인 여성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 공개적인 공간으로 언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의 공개, 그리고 공개된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고 나아가 이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은 사건공개 전략이 여성들에게 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효과는 직접적/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성폭력사건이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공개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로 드러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자신의 몸/자아에 남아 있는 그 고통과 분노들을 공개적인 언어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을 ‘피해’ 및 ‘사실’로서 공표하고 인정받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⁵⁾ 마지막으로 사건의 공개는 가해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성폭력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 가해자의 이후 행동들을 통제하게 되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⁶⁾

② ‘공동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가해자 사과문의 효과

그러나 이같은 목적들이 모두 공개적인 여론단위의 입장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략상의 선택’이라는 한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희석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라는 공간설정,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과’로서의 가해자공개사과문 등을 들 수 있다. 가해자가 공개실명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가해자가 공동체 문화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 문화는 그 가해자가 없다면 순수하고 평등한 것이었던 말인가? 당연히도 아니다. 그러나, ‘남성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온건함과 휴머니즘으로 포장된 남성의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와 일정한 타협지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해자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속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해를 끼친

4) 여기에서의 ‘성적인’의 의미는 gender나 sexuality의 관점에서 파악된 것이 아닌 그야말로 개인들 사이의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읽혀지는 ‘성관계’로 해석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을 ‘폭력’이나 ‘성’(gender/sexuality)의 문제가 아닌 성애적 관계로 말하는 방식이다.

5) 물론 사건공개가 필연적으로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그런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혹은 피해자가 예상치 못했던 2차 가해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로 향할 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또한 사건을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한다.

6) 물론 한 명의 가해자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드러난 한 명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한편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공개 전략이 안정화되면서 그같은 ‘분리’ 경향들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것이며 실제로 그 공동체 자체가 매우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공간임을 드러내고 나아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가능하게 한, 그 공동체 자체의 성폭력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같은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코 가해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⁷⁾ 가해자는 결코 공동체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질 수 없다.

이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련의 가해자공개사과문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이 있고, 그 유형들 중의 하나는 '공동체'에 사과한다는 애매한 문구이다. 어쩌면 그들은 '문제없이 잘 유지되던 과/반/동아리에 이런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 주셨던 학우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 거다. 덧붙여 '가부장적 집안'에 대한 고백과 '남고시절의 경험' 및 '포르노를 통해 형성된 왜곡된 성관념'이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인 탓으로 돌려 버리려는 방어적 행동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등은 빠져 있거나 애매한 말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문은 가해자의 항변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아가 가해자의 죄의식을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지어는 세간의 동정표마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연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이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의 사과문을 봄으로 인해 상처와 분노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자신의 공간에서 분리시켜 내는 것, 그리고 재교육 이수를 통해 최소한 또 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해자가 '공개사과'라는 하나의 '의례'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다시 당당히 부활하는 상황은 피해자를 더욱 위협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기도 한다.

③ 전략 그리고 문제

이같은 한계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일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여성활동가들조차 '공동체' 및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환상 혹은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의 문제'라는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동의'를 얻어내는 목적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제시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주의적 급진성이 희석되고 '휴머니즘적 여성운동'으로 요구받게 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지점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지나쳐 오게 된 것은 분명한 한계다.

'학칙제정'이라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그리고 학생회칙 및 자치규약 등을 제정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것 등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한계선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

2. 100인위의 '폭로' 방식이 학내반성폭력운동에 던지는 함의들.

앞서 말했듯이 100인위 사건공개 방식은 가해자와의 합의나 조율 과정 없는 피해자의 목소리 드러내기 즉 '폭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학내 반성폭력운동의 일반적 방식과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갖는다.

7) 초기의 반성폭력운동에서 가해자를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까지 상정하는 등의 입장들이 있다. 이는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및 높은 기대치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는데, 이같은 관점은 결국 '(단기간에) 변화 가능한 공동체'라는 지나친 이상으로 인한 판단착오이거나 혹은 남성을 적으로 상상해서: 인 된다는 강력한 목소리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악의 경우 드러난 입장에서는 전자의 것이 더 강하다.

'가해자의 합의 없이도 사건규정이 성립한다'는 것이라든지, '사건과 가해자를 공개하는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 출발 지점이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의무는 가해자의 소속/활동 단위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 등은 학내 반성폭력운동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① 사건해결과정에서의 가해자의 위치 그리고 책임

사실상 학내여운단위에서 채택한 '비대위'라는 방식은 일정정도 가해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가해자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물론 비대위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발언을 완벽하게 배제하거나 가해자의 합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외부적으로 비대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과 비대위 내부적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22m?* '재판성'에 대한 기대는 비대위가 피해자 지원체제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치고 나갈 수 있음을 생각 하더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위치로서의 비대위 역할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과연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위가 가해자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위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가해자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운단위에 그만큼의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정작 가해자가 속한 단위의 구성원들은 손을 놓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역할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가해자를 공개만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험박이나 '우리는 공동체를 바꿀 능력이 없으니 여성주의자들이 우리들을 바꿔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비굴한 척 하는 뻔뻔스러움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가해자의 위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이상주의적 경향 혹은 가해자를 명백한 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한계와 더불어 성폭력 문제를 드러냄에 있어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폭력과 권력의 관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들을 보여주는 지점들이다.

② 지속적인 언어화, 새로운 언어화

이 부분은 100인위 발제문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글의 전체 맥락과 약간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100인위에서 공개한 사건들의 경우 학내 여성운동가들조차 '확실하게 동의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 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폭넓은 그리고 섬세한 성폭력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통신상에서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시비가리기와 피해자의 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에 대한 냉소적 비웃음들이 난무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며 주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그 성격이었다.

학내에서 공개되는 성폭력이 점점 더 급진적이고 폭넓은 것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및 그것을 언어화 할 수 있는 힘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과거의 것과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 냉소적인 비웃음 혹은 엄중한 재단 등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운단위에서도 그같은 냉소와 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

8)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조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결국 '가해자도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식의 황당한 입장들이 공공연히 드러났던 점이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감싸안기'로 모아지는 경향 그리고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등에서 이같은 애매한 '실증'의 한계들은 잘 드러난다.

9) 현재의 상황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조금씩

비대위 중심주의
임가설이
가해자
22m
56mm

추상적으로 성폭력이 넓은 범위를 가진 개념이며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인식'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욱 더 구체적인 언어로 여성들의 피해와 남성들의 가해행위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여백들을 채워나가는 것에 학내 여운단위가 상대적으로 정제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에 비해 100인위에서는 공세적으로 이 공백을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방향 모색

사실 이 글이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해진 사건공개 그리고 가해자실명공개사과문에 대해 다시 한번 바닥부터 생각해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에 이같은 전략들을 제시한 것에 비해 그 의미와 성과들을 나름대로 정리된 언어로 지니고 있는 현재의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그것들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얘기를 풀어본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영원히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한다.



사건공개의 전략에 대한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당장에는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사건공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건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기도 하다. 당장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나아가 '비대위 체제는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은 사실 각 단위의 활동 경험이나 상황 그리고 관점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무용론'을 일반화하는 것 역시 개인적 경험에 편향된 입장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굳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비대위의 자리매김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로서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제 활동 내용에서도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늘려가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 학칙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변화와도 연결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학칙이 목표나 기대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이 동의하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서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인력과 재정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성주의적 전문성'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등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한계적이다. 비대위가 피해자지원체계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비대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학칙 등을 활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는 것으로도 갈 수 있다.

관악의 경우 상담소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대위 체계를 통한 사건해결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칙과 상담소가 피해자들의 기대나 요구들을 소화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명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대위체계를 통한 성폭력사건 해결을 여전히 유효할 것이지만 그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간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들을 잘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성과를 고정된 결과로서 흡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들과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끝나지 않는 과제임을 말하며 글을 맺는다.

피해자 친구 BoB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대중의
피해자 대변인 (현명)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자기말하

그리고, 강이나 자아비성폭력,데이트 성폭력 그리고 (이성애적) 연애 등에 대해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도변화 필요하다는
현실이 가시화?

있는 현명
지침은 5등기